채무조정 요청서

■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
■ 채무조정 요청대상

채권금융회사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
■ 채무조정 요청사유

실직	폐업	질병 및 사고	소득 감소			
기타						
)			

■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- 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- 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- 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- 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- ◇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- 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- ◇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- ◇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 - 1.채무조정요청서
 - 2.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 - 3.채무조정안
 - 4.변제능력 입증자료
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,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담당자(☎02-2018-0689)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.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(인)